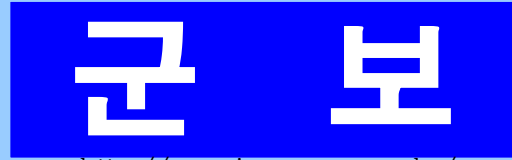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285호 2013. 1. 8. (화)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04호 정선군 상징물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정선군 규칙 제120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정선군 규칙 제120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7
- 정선군 규칙 제120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

【훈 령】

- 정선군 훈령 제405호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7
- 정선군 훈령 제40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1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규 칙

정선군상징물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1. 8.

정선군 규칙 제1204호

정선군상징물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상징물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상징물조례시행규칙”을 “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정선군상징물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정선군 상징물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정선군 상징물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미래기획단”을 “농업축산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상징물조례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정선군상징물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① <u>조례</u>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 2. (생략) 3.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 : <u>미래기획단</u> 4. ~ 5. (생략)	<u>정선군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정선군 상징물 조례</u>」----- -----. 제2조(사용승인) ① 「<u>정선군 상징물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농업축산과</u> 4. ~ 5.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상징물 관리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생약초공동브랜드의 관리부서 개정
 - 미래기획단 ⇨ 농업축산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1. 8.

정선군 규칙 제120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8급상당 3년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부칙 <u>제1조(시행일)</u>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특례)</u>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table><tr><th>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th><th>6급</th><th>7급</th><th>8급</th></tr><tr><td>별정직 보건진료원</td><td>6급상당 6년 이상</td><td>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td><td>8급상당 3년 이상</td></tr></table>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8급상당 3년 이상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	8급상당 3년 이상						

개 정 이 유

- 보건진료직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요건 변경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보건진료직 임용예정계급별 세부 경력기준 마련(부칙 제2조)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1. 8.

정선군 규칙 제120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68	271	11	86	20	87	93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3	226	6	59	16	67	79
I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	1	1					
	행정,시설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4	11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시설	0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20	68	3	8	4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시설	9	9			0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0						
	행정·농업	8	2				1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0			0			
	농업·지도사	0			0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2			2			
7급 소계		146	75	1	22	5	19	24
	행정	47	25	1		0	7	14
	세무	7	6					1
	사회복지	6	3				3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5			1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8급 소계		111	48	0	22	5	18	18
I	행정	30	15			1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3					0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9급 소계		48	21	0	5	1	9	12
I	행정	11	4				4	3
	세무	3						3
	사회복지	11	4				2	5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5	2				2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2	1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4	2	0	2	0	0	0
I	연구사 소계	4	2	0	2			
	학예연구·별정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20	3	0	17			
I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8	3	0	15			
	농촌지도사	17	3		14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1			1			
별정직 계		2			2	0	0	0
I	6급상당 소계	1			1			
	보건진료원	1			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88	39	5	6	4	20	14
I	6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기·조무	1	1					
	7급 소계	18	12	0	1	2	3	0
	토목	2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2	0				2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4	2			1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급 소계	11	4	1	0	1	5	0
	토목	1	1			0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0	0				0	
	영사	1	1					
	운전	4	0				4	0
	필기	1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1	0	1				
	9급 소계	55	20	4	5	0	12	14
	토목	3	3					
	전화상담	1	1					
	통신	0						
	전기	2	2			0		
	기계	5					1	4
	열관리	1	1					
	운전	18	4	1	4		4	5
	필기	6	3	1	1		1	
	워드	1		1				
	전산	0	0					
	조무	17	5	1			6	5
	통신·전기	1	1					

개 정 이 유

- 4~5급 복수직위를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도시건축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원의 총수: 568명(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271명(현행과 같음)
 - 의 회: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20명(현행과 같음)
 - 읍 면: 180명(현행과 같음)
- 직렬별 정원조정(별표)
 - 일반직
 - 행정·시설 5급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행정·시설 5급
 - 행정·사회복지 4~5급 ⇨ 행정·사회복지5급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3. 1. 8.

정선군 규칙 제120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를 “주민생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로 하고,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문화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생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 -----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 ----- -----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 ----- ----- -----.

개 정 이 유

- 군정 당면 현안문제 및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4~5급 복수직위를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도시건축과장으로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4~5급 복수직위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훈 령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01월 0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훈령 제405호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및 10년 이상 근속 중인 모범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년 3개월
4. 강원도 대중교통친절봉사왕 수상자 및 5년 이상 근속 중인 모범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9개월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 중 모범운전자 근속연수는 이 규정 발령일로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 ~ ② (생 략) ③ 신규면허 신청자 중 사업용자동차 운전종사 기간 중 교통과 관련된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자기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1인이 2개 이상의 표창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가산기간이 제일 많은 1개에 한하여 무사고운전 경력으로 가산한다. 1. (생 략) <u>2.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1년 3개월</u> 3. (생 략) <u>4. 강원도 대중교통친절봉사왕 수상자: 9개월</u> 5. ~ 7. (생 략)	제6조(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2.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및 10년 이상 근속 중인 모범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년 3개월</u> 3. (현행과 같음) <u>4. 강원도 대중교통친절봉사왕 수상자 및 5년 이상 근속 중인 모범운전자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9개월</u> 5. ~ 7. (생 략)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01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훈령 제40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